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5738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용호

2. C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D은 2009. 4. 30. D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G 주식회사가 발주한 충남 당진군 H 외 386필지 '충남 당진 I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반시설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46억 7,500만 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 B이 운영하는 E과 사이에 하도급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 30.부터 2009. 5. 29. 사이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E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의 반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령한 용역대금 중 2012. 12. 3., 000만 원, 같은 해 3. 15. 3,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경 '피고 B과 피고 C가 공모하여 F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주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하도급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3. 5. 30. '사인 간에 상호 합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금전거래를 하였다가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위 고소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은 2013. 3. 7.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B과 피해자 A은 아래와 같이 상호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었으므로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추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단 피의자가 2013. 4. 25.까지 6,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본 검찰청에 제출하여야만 본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피고들은 2009. 4.경 공모하여 F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주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작성한 다음 하도급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용역대금의 반환을 독촉하여 8,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들을 사기 범죄사실고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7. 피고들이 2013. 4. 25.까지 6,000만 원을, 나머지 6,000만 원을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판단의 순서

원고는 청구권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청구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용역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서로 금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이상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용역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에 따른 금원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먼저, 피고들이 공모하여 F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주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하도급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 범죄사실로 고소한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계약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금원반환약정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것일 뿐 피고 C가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 C도 피고 B와 함께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13. 3. 7.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B과 피해자 A은 아래와 같이 상호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었으므로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추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단 피의자가 2013. 4. 25.까지 6,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본 검찰청에 제출하여야만 본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원, 피고 사이의 약정은 합의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에게 2013. 4. 25.까지 6,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 B이 위위와 같이 2013. 6. 24.까지 6,000만

원을 입금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조건이 성취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서는 조건불성취로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